



주유소등 석유판매업의 공급자표시제도 시행



김 상 준

(공정거래위원회 일반거래과 서기관 대우)

1. 도입배경

우리나라 석유통업계는 주유소거리제한 완화, 유가자유화 및 석유시장 개방등 중대한 여건변화의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발맞추어 석유통단계에 있어서 공급자상표표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표시·광고의 공정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석유정제업자간의 제품 차별화등 가격 및 품질경쟁을 촉진하고 동경쟁의 효과를 소비자에게까지 파급시킬 뿐만 아니라 유통단계별로 판매되는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대리점 또는 주유소에서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영업장소에 표시하고 있으나 주유소의 경우 실제판매하는 제품과 상이한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공급자표시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석유판매업의 허가제 실시에 따라 주유소 신설이 엄격히 제한되어 정유사의 주유소에 대한 판매경쟁이 심화되어 복수거래가 상당수에 이르고 '91.8월까지의 정부 고시 가격제도의 실시로 정유사간 품질경쟁이 없어 제품

간 특성이 별로 차이가 없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정유사간에 상호 교환판매를 자행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주유소등에서 표시·광고된 상표와 다른 정유사의 제품이 판매된다는 것은 폴·사인등 표시된 상표를 보고 구매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으며 주유소로 하여금 효율적인 경영노력보다는 정유사와의 거래조건 교섭에 의한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더욱이 석유제품 유통과정에서 정유사는 품질관리에 소홀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가격 및 품질 경쟁의 기반조성이 되지 않아 설령 정유사간에 경쟁노력이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효과가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가지 않는 불합리한 모순이 발생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석유판매업계의 불합리한 거래실태를 시정하고 소비자보호와 경쟁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90. 8월 동자부의 석유사업법 개정안에 공급자표시제 조항을 마련코자 하였으나 관계부처간의 법령협의 과정에서 삭제되고 '91년도 경제행정규제완화 추진 과제인 「석유산업의 경쟁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동자부와 협의를 거쳐 「주유소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 표시에 관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지정 고시하여 공급자표시제를 도입 시행하게 된 것이다.

2. 석유판매업의 공급자표시제도 시행내용

공급자표시제(Pole-Sign)란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석유판매업자가 그 영업장소에 특정정유사의 상표 또는 상호를 표시·광고하는 경우 해당 정유사가 공급한 석유제품만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유소등의 영업장소에 특정정유사의 Pole을 설치하거나 주유기, 벽면등에 특정정유사의 상표 또는 상호를 표시·광고하고 해당 정유사 제품외에 타 정유사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중 규제대상이 되는 부당한 표시·광고 대상을 상품·용역뿐만 아니라 사업자 및 상호의 사용까지 확대하여 규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 및 상표표시에 있어서 소비자를 기만 또는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유소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표시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상의 표시·광고의 적용범위는 소비자가 특정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폴·사인, 주유기, 유조차등 운반용구 및 영업장소의 벽면등에 정유사의 상표·상호 및 상징표시등을 표시·광고하는 일체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동고시 제2조)

공급자표시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규제되는 사업자는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유소, 석유정제업자(석유수입업자 포함) 및 그 직영점 또는 대리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3조)

동고시에서 공급자표시제를 적용하는 석유제품은 주유소에서 직접 취급하는 휘발유·경유·등유로 한정하였다. (제4조)

공급자표시제도를 시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 규제하고자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은

첫째, 특정정유사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와 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표시·광고하는 행위

둘째, 서로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제품을 교체 또는 혼합하여 판매하면서 특정 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표시·광고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특정정유사의 상표를 표시·광고하면 해당정유사 제품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주유소등이 복수거래를 하고자 한다면 독자적인 주유소 상호를 사용하거나 Non Pole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째, 하나의 영업장소에 서로 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되는 유형은 폴·사인, 주유기, 벽면등에 서로 다른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하거나 둘이상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등이다.

네째, 석유정제업자가 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제품을 공급받거나 외국석유제품을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자기제품의 품질수준에 미달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자사 상표를 표시·광고하는 행위이며

마지막으로 위에 규정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외에 기타 실제판매하는 석유제품과 다른 상품을 표시·광

고하거나 소비자를 기만 또는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3. 추진방향

석유판매업에 있어서 공급자표시제도는 동자부와 협의하여 이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되 업계가 계약갱신, 폴·사인교체등 이에 대비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여 시행 이후 3개월의 지도·계몽기간을 주고 오는 7월1일부터는 위반업체에 대하여 단속할 계획으로 있다.

이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동자부는 업계로 하여금 새로운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관할허가 관청에 동계약서 사본을 '92. 2. 29까지 제출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동자부는 정유사로 하여금 거래업소에 자사제품의 품질표시 의무를 부여할 것이며 주유소업계의 요구사항인 정유-주유의 직거래 허용문제도 신중히 검토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도 현행 제품공급 계약기간 1년을 연장하는 방안도 동제도시행후 유통여건, 시장경쟁요인등을 분석하여 검토할 예정으로 있다.

4. 맺는말

석유판매업에 있어서 공급자표시제도 시행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업계는 복수거래등 오랜관행에 의한 타성을 버리고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제품선택권 보호측면에서 자기의 영업장소에 표시한 정유사의 제품만 판매한다는 의식을 확립함으로써 석유유통부문의 경쟁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업계 스스로가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코자하는 제도시행의 취지를 인식하여 이제도 정착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야만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제도를 시행하기까지는 동자부등 관련부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많이 거쳤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결과도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도의 시행으로 지금까지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하더라도 정유사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동경쟁효과가 소비자에게까지 파급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장기적으로 석유산업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이라는 인식을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아울러 정부도 이제도시행과 관련하여 걸림돌이 되는 규제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완화할 방침임을 밝혀둔다. ●